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강화)
-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상장폐지 관련 매출액 미달의 예외인 시가총액 산정방법 명확화)
- 다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)
- 라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관련 절차 정비)
- 마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(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대상 확대)
- 바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자율공시 근거 조항 정비)
- 사. 시장감시규정 (미공개중요정보에 이용행위 심리 대상 명확화)
- 아. 코스닥시장 상장격격성 실질심사지침 (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)
- 자. 주식·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시장조성상품 재배정 사유에 시장조성계약 중단을 추가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2025/7/9 개정 · 2025/7/1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'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'(2025. 1. 21, 관계기관 합동) 관련 조치로서, 저성과 기업의 적시·적절한 퇴출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장폐지 관련 재무 및 비재무 요건 강화,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 심사 강화 등 퇴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강화(제4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, 제48조 제1항 제9호 및 제2항 제2호)
 -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 매출액 및 시가총액 기준을 강화
 - 시가총액 : (기존) 50억원 미달 → (개정) 500억원 미달
 - 매출액 : (기존) 50억원 미달 → (개정) 300억원 미달
 - 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매매거래정지 관련 매출액 기준도 동일하게 상향(공시규정 타규정 개정)
 - 다만, 최근 사업연도 시가총액이 1,00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제외
 - 목표치까지 3단계·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되, 매출액은 시가총액보다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1년씩 지연 시행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5/7/9 개정 · 2025/7/1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에 상장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상장폐지 관련 매출액 미달의 예외인 시가총액 산정방법 명확화(제45조 제3항, 제48조 제11항)
 - 최근 사업연도의 일별 상장시가총액을 단순산술 평균하여 산정
 - 다만, 최근 사업연도 중 매매거래가 정지된 날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직전일의 상장시가총액을 적용
- 매출액 및 시가총액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및 시기 명확화(별표 7)
 - 매출액 미달시 해제사유
 - 감사보고서 관리종목 지정사유 해소사실을 확인 한 경우. 다만,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때를 제외
 - 최근 사업연도의 보통주권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1,000억원 이상인 경우
 - 시가총액 미달시 해제사유
 -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매매거래일 이상 계속될 것
 -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매매거래일 이상일 것
- 공모매출시 의무보유 면제 폐지(제21조 제2항)
 -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의 공모매출시 의무보유를 면제하는 규정 삭제
- 외국지주회사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재무서류 제출의무 개선(별표 1)
 - 외국지주회사 자회사 재무제표 범위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직접 지배하는 자회사 재무서류로 간소화
 - 현재 외국지주회사는 연결대상인 모든 자회사(손자회사 포함)의 재무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
- 합병 관련 우회상장 확인서 변경(별지 제6호 서식)
 -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시 제출하는 확인서에 합병가치 비교 항목 신설
 - 우회상장 여부 판단 기준에 기업규모(자산, 자본, 매출) 비교방법 외에 합병가치 비교방법 신설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5조의5 제4항)

- 감사인 의견 미달 회생법인 관련 상장폐지 특례 폐지(제19조 제6항·제7항·제8항, 제48조 제2항 제2호)
 - 종전 세칙에서 정하던 감사인 의견 미달 회생법인 관련 상장폐지 특례를 규정에서 정함에 따라 해당 세칙 내용 삭제
 -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 회생·워크아웃 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장폐지 유예(1년) 가능(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0조 제5항)

다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2025/7/9 개정 · 2025/7/1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'IPO·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'(2025. 1. 21, 관계기관 합동) 관련 조치로서 투자자 보호 및 저성과 기업의 적시·적절한 퇴출 등을 위해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, 상장폐지 관련 재무요건(시가총액, 매출액) 강화,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,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등 진입·퇴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함
- 우회상장 관련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주주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 우회상장 심사 대상 포함, 우회상장여부 판단시 기업가치 평가액 고려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 - '기업 M&A 지원방안'(2023. 5. 8) 세부과제에 포함된 내용

2) 주요 내용

-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(제26조 제1항 제5호)
 -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 기준 축소(50% → 30%), 가격괴리율 기준 미만인 경우 의무보유 기간 확대(1개월 → 3개월)를 통해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 강화
-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강화(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, 제54조 제1항 제12호, 제56조 제1항 제15호)
 - 시가총액 : (기준) 40억원 미달 → (개정) 300억원 미달
 - 매출액 : (기준) 30억원 미달 → (개정) 100억원 미달
 - 다만, 목표치까지 3단계·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되, 매출액은 시가총액보다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1년씩 지연 시행

[연도별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적용]

구분		시가총액	매출액
기존		40억원	30억원
개정	2026.1.1.~	150억원	
	2027.1.1.~	200억원	50억원
	2028.1.1.~	300억원	75억원
	2029.1.1.~		100억원

□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(제54조 제1항 제1호의2, 제55조 제5항, 제55조의2)

-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이후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(사업보고서 미제출 포함)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즉시 상장폐지
 -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재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,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
 -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·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상장폐지를 유예(최대 1년)
 - 회생·워크아웃 계획 최종 승인
 -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에 따른 감사의견 미달일 것(회계부정, 감사증거확보 어려움 등 제외)
 - 회생·워크아웃 종료 후 감사의견 변경이 가능하다는 감사인 의견서 제출

□ 실질심사 등 심의단계 축소(제6조 제1항, 제57조 제5항·제8항, 제58조의2)

- 심의 주제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동일한 실질심사 및 상장예비심사의 2심과 3심을 통합하여 2심제로 축소
- 각 위원회별로 추가개선기간 부여 근거 신설

□ 총주주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을 우회상장심사 대상에 포함(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)

- 총주주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의 경우 우회상장 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어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 포함

□ 합병에 대한 우회상장 여부 판단시 기업가치 평가액 고려(제33조 제2항)

-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보다 기업가치가 큰 경우 우회상장 심사 필요성이 있어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 포함

□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불인정 절차 정비(제8조)

-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불인정에 대한 불복시 재심사·이의신청으로 구분하여 절차 명확화

- 상장전환우선주 전환 손실 관련 신규상장 심사요건 정비(제28조 제1항, 제75조 제1항)
 - 상장전환우선주(RCPS) 전환에 따른 파생상품손실에 대해 신규상장 재무요건 적용 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라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5/7/9 개정 · 2025/7/1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'IPO ·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'(2025. 1. 21. 관계기관 합동) 관련 조치로서 투자자 보호 및 저성과 기업의 적시 · 적절한 퇴출 등을 위한 진입 · 퇴출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절차를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강화 관련 절차 등 개선(제49조, 제51조, 별표 10)
 - 매출액 기준 미달시 시가총액 확인을 위한 절차 정비 및 시가총액 산정방식 개선, 관리종목 지정 해제 시기 관련 문구 정비
-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관련 절차 정비(제59조, 제60조의2)
 -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에 대한 상장폐지 유예 제도 관련 감사인 원거서 서식 마련
 - 2년차 감사보고서 제출시에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관련 조항이 적용되도록 정비
- 실질심사 등 심의단계 축소에 따른 조문 정비(제62조, 제63조)
 - 실질심사 절차가 2심제로 축소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
- 상장요건 중 계속사업이익 조정에 대한 세부 내용 마련(제26조, 제75조)
 - 상장요건 중 하나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산정 시 기업계속성과 무관한 금융부채평가손실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 마련

마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(2025/7/9 개정 · 2025/8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확대방안(2021. 1. 14)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대상을 모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대상 확대(제24조의2 제1항)
 -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대상을 세칙으로 위임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모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공시하도록 조문 정비

바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25/7/16 개정 · 2025/8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확대방안(2021. 1. 14)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대상을 모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대상 확대(제7조의2 제1항)
 -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대상을 세칙으로 위임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모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공시하도록 조문 정비
- 자율공시 근거 조항 정비(제8조 제7의2호)
 -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대상이 모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율공시 근거 조항을 삭제

사. 시장감시규정 (2025/7/23 개정 · 2025/7/2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가 인터넷 매체에서만 공개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명확한 심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심리 대상 명확화(제13조 제1항)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에 명시된 정보공개방법 외의 방법에 의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도 심리 범위에 명시

아.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(2025/7/9 개정 · 2025/7/1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'IPO ·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'(2025. 1. 21. 관계기관 합동) 관련 조치로 진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지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(제11조, 제12조 및 별표 2)
 - 개별심사 요건을 종합심사 요건으로 편입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(2025. 7. 9)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및 코스닥시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준표 정비
 - 실질심사 등 심의단계 축소 등

자. 주식 ·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2025/7/22 개정 · 2025/7/23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조성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시장조성상품을 신속하게 재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시장조성상품 재배정 사유에 시장조성계약 중단을 추가(제9조)
 - 시장조성계약 중단시 시장조성상품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- 시장조성계약 중단 근거 정비(제15조, 별제 제3호 서식)
 - 시장조성계약 중단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식 ·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표준 계약서(지침 별지 제3호) 제11조 제7항의 조항을 정비하여 지침에도 기재

3) 관련 규정

- 금리·통화·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2025/7/22 개정·2025/7/23 시행)
 - 제14조, 별지 제2호 서식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